연목 붕괴로 컨베이어에서 떨어짐

재 해 개 요

'15. 8월 경북 울진군 소재 목재 공장에서 컨베이어에 올려놓은 연목다발 의 묶음용 스틸밴드를 절단하던 재해자가 묶음이 풀리면서 연목과 같이 작업장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임

재 해 상 황 도





기인물 : 연목(서까래)

재해상황도

재해발생상황

○ 운반을 위해 연목 다발에 묶어 놓은 밴드를 절단하다가 무너지는 연 목 더미와 함께 작업장 바닥으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

※ 기인물 : 연목(서까래)

- 크기 : Ø150mm x L2,000mm

- 중량 : 약 25~30 kg

- 높이 : 1 m

재해발생 원인

-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미작성
- 중량물 취급 작업에서 작성해야 하는 추락, 낙하, 붕괴 위험 등을 예 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음
- 안전보호구(안전모) 미착용
-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음

동종재해 예방대책

-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
- 추락, 낙하, 붕괴위험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함
- 안전모 착용
-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에서는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함

관련 법규

- ▶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(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)
-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해당 작업, 작업장의 지형·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·보존하여야 하며,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.
 - 11. 중량물의 취급작업
- ▶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(보호구의 지급 등)
-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.
 - 1.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: 안전모